

정보통신공사업의 일반현황

The Present Position of Telecommunication and Facilities Construction Service

강병성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업진흥부 대리
Byoung Sung Kang · Korea Information & Comm. Contractors Association

I. 개 요

인류의 발생과 함께 시작한 통신은 불, 소리, 문자등을 이용하면서 줄곧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 정보와 통신이 함께 했다. 지역에 따라 통신의 수단은 각기 달랐으나, 그것은 한결같이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를 잇는 가장 대표적인 의사전달수단으로 자리잡아 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봉화(烽火)를 통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19세기 중반에는 근대적 통신시설이 서양의 다른 문물과 함께 들어와 1885년 9월 28일에는 한성과 제물포를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선이 설치되었다. 그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관용이나 군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일반국민의 전화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는 전화작체가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했다.

이와같은 사회적 욕구에 의하여 정부는 1971년 1월 22일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화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통신공사업이 건설 또는 전기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발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신공사업은 전화설치에서 시작하여 통신설비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1976년 전기통신공사업으로, 1997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명칭의 변화를 거치면서 그 사업영역을 전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로 확대하였으며, 20여개 업체로 시작된 공사업체수 역시, 2003년 7월말 현재는 5,192개 업체가 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II. 법령상의 공사업제도 변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의의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 제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며,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도급 기타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종의 변천추이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설비공사업과 무선설비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시작되어, 1995년까지는 기술상의 종류인 기계, 선로, 전송으로 구분한후, 다시 시공규모, 업체규모 등이 감안된 1, 2등급 및 별종공사업으로 세분화되었다.

<표> 공사업종 변천추이

연도	변천 내용	비고
1971	• 유선 및 무선설비공사업 각 3등급	6종
1976	• 유선설비 3등급을 기계, 선로, 전송공사업 각 3등급으로 세분 • 무선설비공사업 3등급	12종
1979	• 유선통신기계, 유선통신선로, 전송통신공사업 각 2등급으로 재조정 • 별종유선 및 별종전송통신 공사업 신설	8종
1995	• 일반공사업 1·2등급 • 별종공사업	3종
1998	• 정보통신공사업 1·2등급	2종
1999~ 현재	• 정보통신공사업	1종

1995년 이후에는 정부의 업종통합정책에 의하여 기술상의 분류를 없애고, 시공규모 등에 의한 1, 2등급 및 별종공사업으로, 1998년에는 1, 2등급으로, 1999년에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단일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정보통신공사업 법체계

정보통신공사업법(1971년 제정당시 법령명칭은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1971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며, 12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2001년 1월 16일에 현재의 법령의 모습을 갖추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설치, 유

지·보수)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부대공사, 유지·보수공사” 등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격을 갖춘 적격자가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설계·감리,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시정명령,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자 제도를 확립하여 기술인력의 육성과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기술의 향상, 공사시공 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은 물론, 공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구성체계와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체계

정보통신공사업법(제 78조, 부칙 2항) 4조)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60조, 부칙 4항)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60조, 부칙 5항)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 27조, 부칙 2항)
고 시(6)

— 경미한 공사의 범위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정보통신공사업관리 및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관리에 관한 업무위탁기관 지정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구성내용

구 분	관련조항	내 용
제 1장 총칙	제 1조~제 5조	• 목적, 정의, 공사의 제한
제 2장 공사의 설계·감리	제 6조~제 12조의 2	• 기술기준의 준수, 설계, 감리
제 3장 공사의 시공 - 제 1절 공사업의 등록등 - 제 2절 도급 및 하도급 - 제 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제 13조~제 37조	• 등록의 기준, 양도, 상속 등 • 도급의 분리, 원칙, 하도급의 제한 등 •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공사의 사용전검사, 하자담보책임 등
제 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 38조~제 40조	•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육성 및 교육,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 겸직금지 등
제 5장 공사관련단체	제 41조~제 51조	•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제 6장 <삭 제>	제 52조~제 63조	•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 7장 감독	제 64조~제 68조	• 시정명령, 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청문
제 8장 보칙	제 69조~제 7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록의 공고, 수수료
제 9장 별칙	제 74조~제 78조	• 별칙, 양별규정, 수수료
부 칙	제 1조~제 2조	• 시행일, 공사제한의 예외에 대한 규정의 적용례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제·개정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제 정 (1971. 1. 22)	•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제정 • 부분규정으로 존재하던 각종 규칙을 통합하여 전신전화 설비공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공사업 허가제 도입
개 정 (1987. 11. 28)	• 전기통신공사업법으로 명칭 변경 • 과태료 규정 도입	•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사업자간의 공제조합 설치
개 정 (1995. 1. 5)	• 공사업의 구조개편	• 분리발주의 예외 인정
개 정 (1997. 8. 28)	•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명칭 변경 • 공사업 수시허가제 도입 • 기능인력의 양성 및 지원근거 신설(정보통신기술자격관리제도 도입) •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공시제도 도입	• 설계 및 감리 인정기술자, 사용전검사제도 도입
개 정 (1999. 2. 5)	• 공사업종의 구분제도 폐지 • 분쟁조정제도 폐지	• 규제개혁 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 정 (2001. 1. 16)	• 시공능력평가는 수시평가제에서 공시제로 전환 •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규정 신설 • 공사업종의 구분제도 폐지	

III. 정보통신공사업계 현황

1. 정보통신공사 업체수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수는 1998년 이후 급증하였다.

업체수가 급증한 첫 번째 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의 진입제도의 변화(허가제 → 수시 허가제 → 등록제)와 등록기준의 완화등 정부의 정책변화 때문이다. 1971년 시작이후 1995년 까지는 엄격한 허가제에 의하여 년1회 일주일 간의 공고기간에만 허가신청이 가능하였고, 신청자격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리다보니 업체수의 증가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수시허가제로 전환되어 년중 내내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부터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누구든지 등록기준만 갖추어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통신공사시장규모의 팽창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면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초

고속정보통신설비등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져 통신공사시장규모가 팽창하였다. 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는『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업체수도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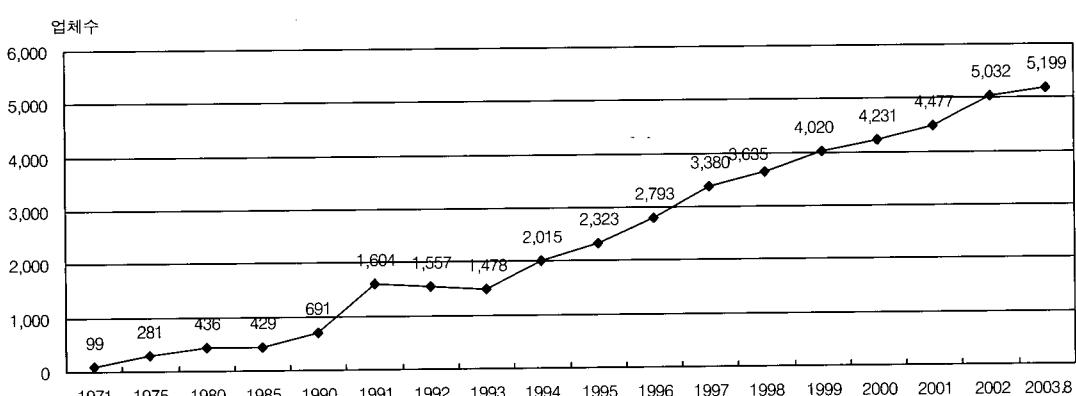
이러한 업체수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수의 증가는 시장규모의 증가와 함께 공사업계의 외형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부실·부적격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공사업질서문란 및 기존업체들의 동반부실화, 과당경쟁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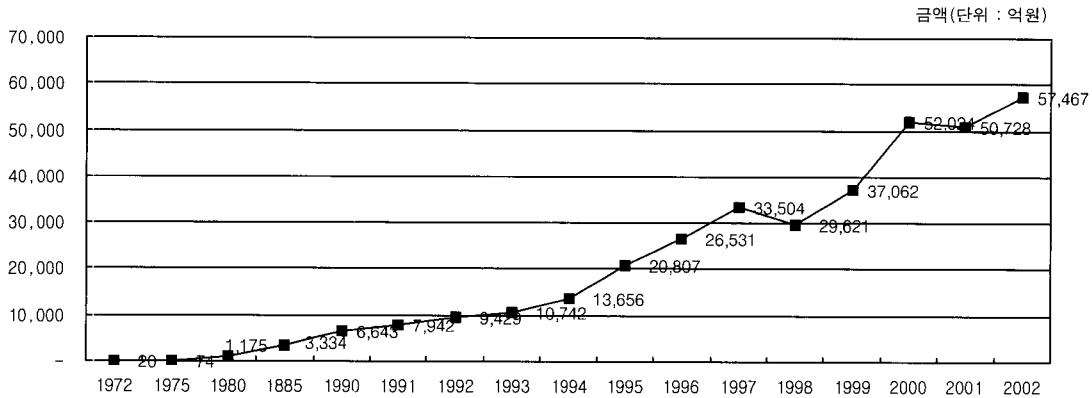
2. 시장규모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역시, 1972년의 20억원에서 시작되어 1997년 3조원을 넘었으며, IMF 기간동안 침체기를 지나 2002년에는 5조 7,467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팽창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정보통신설비의 등장과 함께, 일반국민들의 정보화에 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 통신사업자들의 신규투자의 증가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그림 3-1] 연도별 업체수 변동추이



[그림 3-2] 년도별 공사실적

된다.

향후의 시장규모는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이 완료단계이며,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 5조원 정도의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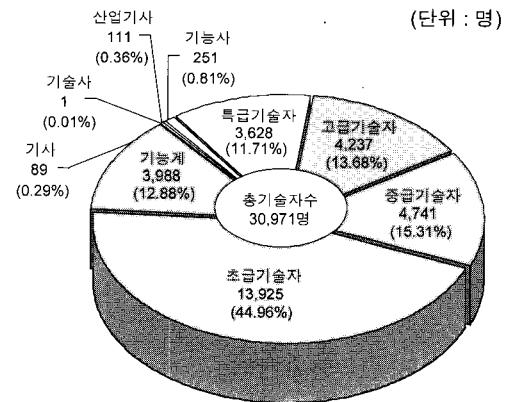
소하여 공사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켰음은 물론,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대여등 사회적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2003년 7월 31일 현재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공사업계의 종사하는 기술자는 30,971명이다.

3.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제도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당해 정보통신공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체득한 기술자를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1997년 8월 28일 법 제 5386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외에도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관련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종전 국가기술자격자들의 현장근무기피로 인한 기술자부족문제를 해



[그림 3-3] 정보통신기술 자격자 보유현황

IV.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안사항 및 향후전망

1. 현안사항

2003년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커다란 전환점에

서있다. 그 이유는 2003년중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1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부적격업체 퇴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시장진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었고, 실태조사등 등록권자의 사후관리도 약화되었으며, 운에 의하여 공사주주가 결정되는 현행 국가계약제도로 인하여 공사업계에는 Paper company, Mobile company등 부적격업체가 다수 등장하였다.

이들업체는 최소한의 기술자도 보유하지 않고, 전자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후, 일괄하여 실제 시공업체에게 넘기고 있어 이 과정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른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입찰브로커화”된 이들업체가 기술자, 사무실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업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상적인 공사업체까지 동반부실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의 정보통신공사업법령개정시 이러한 부실·부적격업체퇴출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1.2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확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공분야를 포함한 민간발주자들까지 신규시설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기간망설비 구축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KT와 SKT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KT의 독주로 인해 새로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업계는 업체수의 과다로 인한 과당경쟁에 이어 공사수주물량부족으로 인해 공사업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1.3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분리발주제도폐지 주장에 대한 대응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상의 전문성, 특수성을 확보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제도이나, 건설분야에서는 그동안 분리발주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으며, 2003년중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등에 분리발주제도폐지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주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공사업계에서는 건설분야의 분리발주제도폐지주장에 대하여 업계의 생존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2. 정보통신공사업의 향후전망

정보통신공사업의 향후전망은 선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쇠는 공사물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내경기전반의 침체로 인하여 공사물량전망을 선불리 할 수 없는 입장이며,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추진, 조직개편등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임에 따라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쇠퇴산업인 건설, 전기에비하여 그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망은 공사업계 스스로의 기술개발, SI 등 활동영역의 다각화등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생각된다.

저자 소개



강 병 성

경원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전자공학
석사)
현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업진
홍부 대리